

# 토론회 개요 및 토론내용

## I. 개요

위원회는 2월 22일(수) 프레스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구체적인 조정사례를 통해 논의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례를 다루었다. 이에 대해 취재현장에서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어느 정도 노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또한,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한 포털의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포털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언론사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위자료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권성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코자 하는 것은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언론과 국민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무수습 중인 전국 로스쿨 재학생 10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행사개요>

- |       |  |
|-------|--|
| ◆ 일 시 | 2012. 2. 22. (수) 14:00 ~ 17:00                             |
| ◆ 장 소 | 프레스센터 6층 (언론중재위원회 회의실)                                     |
| ◆ 사회자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변호사)                                  |
| ◆ 참석자 | 총 50명 (로스쿨 학생 10인, 언론사 및 포털사 관계자 12인, 중재위원 2인, 사무처 직원 26인) |

## Ⅱ. 제1사례 토론내용

**사회자(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공개토론회를 시작하겠다. 이 자리에는 현재 위원회에서 실무수습 중인 전국 로스쿨생 10명과 언론사 및 포털사 관계자, 조사관을 비롯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로스쿨 학생 및 외부 참석자 소개)

오늘 토론회 대주제는 '언론보도로 인한 위자료, 얼마가 적당할까' 이다. 그러나 실제 토론은 여러 논점에서 이뤄질 것이다. 또한 이런 논의를 위해 제시할 토론 소재는 위원회가 실제로 작년에 처리한 사건이다. 잘 아시다시피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심리장 안에서 이뤄진 당사자 간의 주장이나 대화는 외부에 공개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례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실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다만 가급적 당사자 실명이나 구체적 내용은 필요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참석자들께서도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외부에 공표를 삼가 주시기 바란다.

토론은 두 개의 사례로 진행될 예정인데 첫 번째는 주로 초상권 침해와 포털사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는 쟁점을 가진 사례이고, 두 번째는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 유무와 적절한 위자료 수준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는 사례다.

외부 토론회를 참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발제와 지정토론, 강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위원회에서도 작년까지 이런 형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시간적 제약으로 참석자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뿐더러 단순히 각자 생각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치고, 참석자간 의견을 나눌 기회가 부족했다. 오늘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가 사례를 설명하는 와중에 참석자들에 질문도 드리고 이에 대해 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교류하는, 난상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모든 참석자들께서는 중간 중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자유롭게 하기 바란다.

앞서 오늘 다룰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들 사례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실체법적인 관점에서는 해당 사안이 과연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다뤄볼 수 있을 것이다. 절차법적인 관점에서는 과연 조정이란 무엇이며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정을 하다보면 조정 당사자의 의사와 중재부의 정의 관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실무와 관련한 내용의 토론회이므

로 실제법과 절차법을 오가며 자유롭게 논의를 발전시켜 보면 좋겠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다. 여기서 다룰 사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일 중앙 일간지 한 곳이 발행한 호외를 길거리에서 읽고 있던 한 시민이 자신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이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 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또한 신청인은 해당 기사를 매개한 여러 포털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의 주된 취지는 자신이 촬영되는 것을 몰랐고 따라서 초상 공개에 동의한 바 없으며, 포털이 이를 매개하는 것에도 동의한 바 없으므로 언론사와 포털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포털사가 매개한 기사 하단에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렸는데 포털사가 이를 방치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음을 주장했다. 실제로 제가 몇 개의 댓글을 보니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목도리를 두르고 복장을 연출했다', '짜라시 같은 신문을 읽고 있다'는 등 신청인을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다수 있다.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포털사 측은 기사 제공 언론사가 요청할 경우 기사 삭제를 하겠으나, 포털은 언론사와 계약에 따라 기사를 단순 매개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실제로 위원회가 포털 관련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포털측은 대체적으로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신청인과 언론사, 포털사의 주장을 각각 설명해 드렸다. 참석자들께서는 이번 사안의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인정할 것인지, 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김바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폴리처상을 수상하거나 가치 있는 보도사진으로 평가되는 것들 중 유독 일반인을 촬영한 사진들이 많다. 사회현상을 표현해야 하는 보도사진의 특성상 일상생활 속의 일반인의 감정을 잘 포착한 사진은 몇 마디 글보다 강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일반인은 보도사진에서 가장 많이 포착되는 대상이다. 또한 대부분 보도사진의 경우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많은 만큼 긴급성이 중요한데, 매번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보도의 신속성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등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아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인데, 저작권은 인격권의 한 종류이고 사용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유사한 점이 많다. 초상권 관련 규정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필요성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이 없지만 저작권 제35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의 촬영지인 도로는 공중에게 개방된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바, 비록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지만 그 장소가 공공장소라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보도사진의 특성상 상업 사진이 아니라는 점, 해당 장소가 공공장소라는 점 등을 이유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며 저작권법 상에서의 예외적인 조항을 이번 사안과 같은 초상권 관련 문제에서도 유추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해 달라.

**김민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초상권 침해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에 있어 일일이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소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초상권 침해의 면책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초상권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초상권과 저작권 모두 인격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의 관련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촬영의 초상권 침해를 부정하려는 견해는 무리한 해석이다.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초상의 특성상, 초상권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위험이 저작권보다 높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서 이뤄진 촬영이라는 점과 김정일 사망이라는 호외 자체가 갖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긴급성과는 별도로, 이를 전하는 데 있어 반드시 특정한 신청인의 초상이 촬영, 공표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현정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초상권 침해이다. 초상권은 인격권이자 자기결정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초상 촬영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수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묵시적.추정적 동의가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나 공익성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면책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포털라인에서의 사진촬영이나 시위 및 집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경우가 묵시적.추정적 동의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이른바 길거리 사진, 즉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었다고 하지만 기자가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이 아니라 단지 어려웠거나 꺼려했던 상

황에 불과하고 현안의 긴급한 보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이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타인의 초상을 언론보도에 사용하려면 초상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촬영·작성거절권 및 공표거절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언론사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옳을 것이다.

**사회자** : 언론사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와 반대로 초상권자의 인격권 보호를 강조하는 주장도 있었다. 사실 사진을 촬영하면서 전부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도로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촬영이란 점에서 논의해 볼 점이 더 많은 것 같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일선 기자분들도 많이 참석해 계신데, 초상권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점들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조광형 (뉴데일리 팀장)** : 현직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 일반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고민을 한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충격적 뉴스 등 불가피하거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인이 아닌 일반인을 기사에 노출시킬 때에는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특정되지 않도록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기자나 데스크가 모자이크 처리 여부를 두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 김정일 사망과 같은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건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이를 과감히 보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나 초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묵시적 동의 등이 전제될 수 있는 시위장소 등에서 촬영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자택 안을 촬영하거나 몰카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크게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사회자** : 현직에 계신 기자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사실 위원회가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상당부분이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이다. 지금까지 언론사와 신청인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을 들어 보았는데,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적인 입장을 한번 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구울화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변호사)** : 상담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과거 KBS 사회부 기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고

충을 많이 들었다. 크게 두 가지를 하소연하는데 예전에는 다 찍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외국에서는 다 찍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냐는 것이다. 그러나 초상권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적 관점에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국토가 넓고 인구도 많으며 인종이 다양해 타인의 일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의 상황과 다르며, 특히 최근 인터넷이 크게 발달해 누군가의 신상이 공개되면 빠르게 전파되어 당사자가 일상 생활에 곤란을 겪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기자가 초상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쁘고 긴급한 취재상황에서 번거로워서 안하는 것이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따라서 초상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묵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만약 부득이하게 초상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렌즈를 줌아웃함으로써 포커스를 흐리게 하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등 초상권 침해를 방지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촬영.보도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상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일도양단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초상권자의 피해와 공익을 비교衡量해 봐야 하고, 만약 공익성이 크다면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보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공공장소라 해도 초상권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아니 되고 만약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봐야 할 것이다.

**성연재 (연합뉴스 차장) :** 기자들이 아웃포커스로 생동감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모든 당사자의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 일례로 아주 추운 겨울날, 독자들에게 체감 추위를 전하기 위해 거리 스케치 촬영을 나간 적이 있다. 체감 추위를 전하는 것도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며 공익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인들에게 한 시간 동안 촬영 양해를 구했지만 한 명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일선 기자로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한 포털에 'OO일보 짜라시를 들고 웃고 있냐'는 리플이 달려 있었다. 아마 이것이 신청인의 가장 큰 조정신청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청인이 읽고 있던 신문은 김정일 사망뿐 아니라 연평도 포격 내용으로 인한 호외판이었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사안에 대하여 호외가 뿌려져 사람들이 이를 읽고 있는 장면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구울화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변호사) :** 본 사안에 있어서 아웃포커스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호외를 읽고 있는 신청인의 뒷모습을 촬영하되 신문 그 자체와 김정일의 사진을 부각시키는 방법도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기자가 시간에 쫓겨 일일이 초상권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자의 이런 불편은 초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본 초상권자의 불편에 비하면 작다고 생각한다. 초상권자는 비난이 담긴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등 엄청난 피해를 당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자 :** 지금 계속 악성 댓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조정사례의 신청인도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혹시 이와 관련한 추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김어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본 사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한다. 해당 댓글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지, 만약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당사자와 포털의 책임 배분 문제이다. 신청인은 '불쌍하다', '눈 버렸다'는 등의 악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가 모욕감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면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으므로 본 사안의 댓글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는 인정될 수 있다. 2009년 선고한 대법원 판결(2008다53812)은 댓글에 대한 포털의 관리 작위 의무를 인정해 "인터넷 게시 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관리하고 거기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는 등 악성 댓글로 인한 당사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댓글에 대한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자 :** 댓글로 인한 당사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모욕, 모멸감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한다면 이를 방치한 포털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사건은 포털사가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이 처음 원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으나, 조정은 기사 삭제로 종결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기사를 매개한 포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문중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 포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를 통해 포털사가 손해배상을 지급한 사례는 한 건 뿐이다. 굉장히 적은 수치이나, 위원회가 포털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한다. 첫째는 사안의 특수성이다. 포털은 기사제공 언론사의 조정 결과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기사 제공 언론사와 신청인의 조정 또는 중재결과를 포털 역시 따라 가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다. 따라서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논의하려면 기사제공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다. 둘째, 당사자의 의견이다. 조정이란 절차 자체가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기사 제공 언론사와 포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즉 신청인은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와 이를 매개한 포털사를 동일한 책임선상에 놓고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로 기사제공 언론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포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아닌, 기사 삭제만 바란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인이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털에 대해 기사 제공 언론사와 동일한 수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볼 때 포털사가 문제된 기사를 매개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08다53812 판결에서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게시 공간에 게재하였다면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선택하여 전파한 책임에 해당한다”며 기사제공 언론사와 포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포털 역시 문제된 기사를 매개했을 경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사안이나 당사자 입장이 달라진다면 충분히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위원회 조정 실무상 포털사의 손해배상 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포털사가 조정중재 대상이 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한 건 밖에 없다는 실정을 언급하고,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주셨다. 포털사의 책임 인정 여부는 논란이 클 수 있는 주제인데 이에 대한 로스쿨생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

**곽경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 책임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포털의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포털은 언론이 아니

라는 점을 든다. 언론은 취재, 편집, 배포라는 세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포털은 단순히 기사를 매개만 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볼 수 없으니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식의 이분법으로는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포털은 '배포'라는 측면에서 언론사보다 훨씬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가 작년에 실시한 뉴미디어 이용자조사를 보면 이용자가 뉴스 등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가 인터넷이고, 매체 종류를 막론하고 하루 평균 2시간 44분의 뉴스나 시사정보 이용시간 중 인터넷 이용시간이 1시간 56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처럼 뉴스이용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상당하기에 이에 따른 책임 역시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구체적 이유는 먼저 손해 확대의 측면이다. 앞선 조선일보 조사 결과 '언론사를 의식하지 않고, 헤드라인만으로 기사선택'한다는 사람이 약 90%였다. 이는 곧 매체 영향력이 낮았던 언론사의 기사도 포털에 게시됨으로써 높은 접근성을 갖게 되므로, 손해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포털이 최초 원인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손해를 확대시킨 주체로 이와 관련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도 있어야 한다는 보상책임설에 근거한다. 포털이 얻고 있는 이익은 막대한데 작년 네이버(NHN)의 매출은 대략 2조원이며, 이중 순이익은 약 4,500억원이다. 이러한 이익 창출에 있어서 포털의 여러 서비스 중 뉴스 제공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2009년 코리안 클릭의 조사에 따르면 NHN의 메인페이지 대 뉴스페이지 뷰의 비율은 3:1로, 네티즌이 네이버에 세 번 들어갈 때 한번은 뉴스를 봤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반대급부로 뉴스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셋째, 피해자 구제 가능성 확대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측면이다. 언론사와 포털 간의 책임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영향력이 낮은 군소매체의 기사가 포털에 게재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경우 군소매체 그 자체보다 포털이 기사 '배포'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소매체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정신에 위배되고,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와 포털이 먼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추후에 포털사가 언론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을 두는 방법을 마련하여 내부 관계에서 상호간 기여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사회자** :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포털을 통해 뉴스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분명히 포털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는 측면이 있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정부분 이득을 얻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김성경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포털의 영향력이 크고,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기사 제공언론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은 달리 살펴야 할 부분이다. 영향력에 대한 구분과 책임 분담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해질 위험성이 크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의 경우 관세나 통화장벽을 통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정부의 개입 및 보호가 가능했으나 포털사와 같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경우 이러한 장벽이 없다. 국내의 포털사들은 구글과 같은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뉴스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을 지우고 규제한다면 실효성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 ISP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ISP는 통신품위법에 의해 규제받지만 발행인으로서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판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포털사에 작위책임을 물린다고 할 때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차원이라면 영업권에 대한 침해도 될 수 있다.

**이정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포털에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나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포털에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막아 그 침해 발생을 줄임으로써 건전한 언론 및 여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포털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언론사가 취재, 편집, 배포한 기사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포털 내에서만 검색이나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포털이 언론이나 아니냐의 논란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사나 사진을 방치할 경우,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선고된 2009다4343판결에 따르면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염민우 (파이낸셜 뉴스 기자) :** 기사 댓글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참석자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악성 댓글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댓글은 언론사 홈페이지의 기사에 게재되는 것이 아니라 포털에 매개된 기사 하단에, 포털사 가입 아이디로 작성된다. 즉 댓글은 포털이 관리하는 회원에 의해 작성되므로 포털사의 권한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댓글에 대한 책임은 포털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셋별 (NHN 대리) :** 포털이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영향력도 높으니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 같다. 대승적으로는 포털이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몇몇 판례를 제시하셨는데 판례에서는 포털의 책임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저장이나 기사 선별 행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을 각 사례별로 따지지 않고, 단순히 영향력이 크니 포털이 책임을 지라는 식의 태도는 법률 정신에 위반된다.

한편 앞서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기사에 대해 포털사가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신문법은 포털사가 언론 기사를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언론사와 기사 공급 계약도 이러한 내용으로 체결하고 있으므로 포털사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손수산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포털의 영향력이나 손해확산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물을 게시한 포털의 불법행위책임 혹은 방조책임 등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이를 위해 포털에게 부과하는 주의의무와 책임근거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삭제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 게시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면 포털에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것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시물인지 전문 법조인들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포털에 상시검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따라서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확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삭제 요청이라는 요건 등에 의해서만 포털의 책임을 인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기사제공언론사라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포털에 위험책임, 보상책임의 법리로써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 만일 피해자의 충분한 피해 구제를 위해 포털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처럼 직접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2차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거나 사용자 책임처럼 직접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등 직접 가해자가 아님에도 사회적 필요상 가혹한 책임을 지는 부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포털의 경우 언론사와 동등한 별개의 책임주체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사 법리에 근거한 책임들에 비하여 더욱 가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포털의 주의의무 위반의 요건들은 더욱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 :** 대법원 판례 등 포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이미 시기가 지난 감이 있다. 결국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서 몇몇 요건을 제시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로 옮겨 갈 필요가 있다.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포털에 책임을 지우는 경우를 적절히 선별해 내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정중재 실무에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벌써 예정된 시간을 많이 지났다. 잠시 휴식 후 다음 세션을 진행하겠다.

### Ⅲ. 제2사례 토론내용

**사회자 :**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다. 첫 번째 세션의 사례를 통해서는 주로 초상권 침해와 포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었던 반면, 이번 사례는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 유무와 적정한 위자료 수준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례이다.

해당 기사는 한 남성이 딱한 처지의 여자 친구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선물도 사 주다가 헤어진 후에는 서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른, 연인이던 남녀가 앙숙으로 변한 이들의 연애사를 기사화한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해당 남성이 먼저 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해 실제로 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고, 그 이후 여성도 3백만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 여성은 기자와 인터뷰한 것은 사실이나 인터뷰 내용이 자신의 사적인 사안이며 심지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사화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에서 비록 자신을 가명으로 처리했으나 실명에서 자음 하나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실제 나이를 적시해 자신이 특정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사는 가명이라고 하지만 신청인의 실명에서 자음 하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남자 친구의 실명 역시 이와 동일하게 처리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측은 답변서를 통해 해당 기사가 그녀의 입장에 의거해 작성되었으며, 그녀가 기자와 만나서 취재에 응한 것은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사의 논조가 그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남자 친구와 분쟁 관계에 있는 그녀를 대변하는 내용이며, 그녀가 정정보도 청구가 아니라 금전적 청구만 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이번 세션에서 다룬 사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설명해 드렸는데, 참석자들께서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민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인은 비록 취재에 응했지만, 기사화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기사 게재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언론사는 신청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청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취지의 보도라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신변이 노출되고 비난에 가까운 질타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이므로 신청인이 만약 기사화 될 것을 알았다면 취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 보이며,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사실만으로 기사 게재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사안의 경우 신청인의 동의가 양해되는 공익성이 있는 기사도 아니므로 언론사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곽경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취재나 기사작성, 익명성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보도가 된 것을 전적으로 기자의 잘못으로 보기에선 무리가 있다. 기사에 적시된 세세한 내용들은 고소장만 보서는 알 수 없고 정황상 신청인이 기자에게 말해 줬을 것이라 보여진다. 즉 기사 작성 과정에 신청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비록 신청인은 기사화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기자의 신분임을 밝히고 한 대화는 당연히 취재임을 예상하고 보도 가능성 또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인은 취재에 응

하면서도 보도하지 않을 것을 부탁했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취재관행을 비롯해 기자가 취재원의 이러한 부탁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현실적으로 기사화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앞서 공익성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정치나 경제 분야와 같은 공익성이 높은 경성 뉴스가 아니라 이번 사안과 같은 공익성이 낮은 연성 뉴스라 해도 국민의 알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기사로 인해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가 있었던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기자만의 잘못이 아니므로 언론사가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양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을 모두 들어 보았다. 저도 가끔 기자들의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나의 발언이 반드시 기사화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자 신분임을 밝혔으니 내가 보도에 동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시각 차이도 존재하는 것 같다. 현직에 계시는 기자분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성연재 (연합뉴스 차장)** : 사건 기자는 팩트만 보도하면 되는데, 이 사안의 기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하다. 대표적인 것이 '발그레 물들었다' 는 등의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기사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이러한 양태의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엄민우 (파이낸셜 뉴스 기자)** : 저도 취재시 전화통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취재원과 전화통화 말미에는 항상 '말씀을 참고해서 기사를 작성하겠다'라고 말을 한다. 이처럼 동의를 구한 후 팩트를 바탕으로 기사를 쓴다면, 그 내용의 구성이 취재원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인되어야 한다. 특히 비판이나 고발기사는 취재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사가 게재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제재를 가한다면 업무 현장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사회자** :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린다. 한편 이번 사례에서는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연을 기사화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익명처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이 특정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취재에 협조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광형 (뉴데일리 팀장)** : 언론사나 신청인 모두에게 과실이 있어 보인다. 보통 처음 기사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의 실명을 표시하고, 기사를 게재하기 전 데스크와 논의

해 익명 처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이번 사례의 기사와 같이 실명과 유사한 가명을 사용한 것은 아마 업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기사 내용이 다소 선정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언론사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사 목적과 그 기사로 인해 누가 이익을 봤는가를 고려해 봐야 한다. 본 기사는 주로 신청인의 입장에서 쓰여 졌고, 신청인이 취재에 응한 점으로 볼 때 자신의 억울함을 기사화하여 이전 남자친구가 이 기사를 보고 반성하게끔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겨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다.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순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각오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었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적인 측면에 어긋난다. 또한 일반적인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의 청구액이 너무 낮은 점으로 인해 신청인의 의도가 의심된다.

**사회자** : 실제 이번 사례의 언론사에서도 신청인이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는 청구하지 않고 금전적인 손해배상만을 요구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에 비해 청구 금액도 지나치게 낮아 신청인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김바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정보다나 반론보도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만 한 것으로 인해 신청인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최초 보도로 인해 이미 신원이 노출되고 명예가 훼손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정보다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다시 기사화 된다면 신청인의 고통이 더욱 심해 질 것이다. 따라서 정정보다나 반론보도 외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광형 (뉴데일리 팀장)** : 정정보다 등을 통해 사안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부담된다면 최초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두고 왜 손해배상만 청구한 것인가를 지적한 것이다.

**사회자**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제 조정에서는 기사 삭제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신청 단계에서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 그 이유는 기사 삭제청구권이 조정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기사 삭제나 배포금지, 게재금지 등은 법원의 가처분으로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를 통한 조정에서 기사 삭제로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로

신청이 들어왔다가 위원회 조정절차에서 기사 삭제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는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합당한 수준이었던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보도로 인해 신원이 공개되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면 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은 얼마라 생각하는가.

**이정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위자료의 법적 성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의견이 다수이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파급력이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사적 제재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위자료에 언론사의 사과의 성격만큼 그 금액이 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는 본 사안의 사건처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자극적이고 가십거리로 만들고서도 1백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한 위자료 책정으로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도 안 되므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통 청구되는 위자료를 보면 1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대부분이고 평균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데, 판례에서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는 요소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 구성,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 형식, 기사에서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기사 제보 및 게재 이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언론사의 노력 정도, 기사 게재 이후 언론사의 태도, 기사에서의 원고의 특정 정도, 기사의 게재가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기사가 게재된 매체의 비중 등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사례는 제목 자체가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선정적인 측면이 있고 여러 자극적인 표현이 본문에서 사용된 점에서 공익성과 진실성을 담고 있다기보다 가십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사가 신청인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인 이전 남자 친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심지어 가명 처리조차 너무나 미흡해 신청인과 그 이전 남자 친구가 누구인지 주변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이 기사를 본 사람이라면 신청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파급력이나 전파력이 큰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어 포털에도 매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의 평균 위자료 1천만원을 기준으로 남성측에는 5백만원, 여성측은 남성측보다 피해 정도가 더 크다는 점으로 볼때 7백만원의 위자료가 적정할 것이라 본다.

**사회자 :** 위원회는 2005년부터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한 이후 적절한 손해 배상액 기준에 대해 항상 고민해 왔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 증거에 따라 손해 여부 판정이 쉬우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에서는 고민 끝에 손해배상 산정 채점표를 만들었는데, 앞서 토론자가 말한 판례에서의 기준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점수를 내고 이에 부합하는 기준액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채점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최근에는 가감표를 만들어 시범 운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채점표와 가감표는 참고 자료이며 이에 구속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가감표는 기준액을 두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따져서 나온 점수를 기준으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점표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언론중재위원회가 위자료 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석자들께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실제 이번 사례의 경우 당사자는 1백만원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앞선 토론자는 적정 금액으로 7백만원을 제시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처럼 중재부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적정 금액과 당사자의 합의 금액에서 괴리가 생길 때 조정기관 으로서는 고민이 된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의견이 합치된 금액으로 합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정 금액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조정기관이 객관적으로 정의롭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당사자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안기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이라고 정의된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신속하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가장 대표적인 대체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이 아닌 조정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볼 때 합의에는 필수적으로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할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조정은 비공개절차이므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시정적 기능이 없으며 자칫 약자가 강자로부터 양보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 즉 조정은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기 아니라 미래지향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질게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조정이 실질적으로 재판에 비해 약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보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사건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보편타당하게 생각하는 적절한 손해배상액수에 비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의 실패와 같이 각 당사자의 자율성에 의존해서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각 당사자 사이에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분쟁해결의 자율성만 강조하면 자칫 자율적인 타협을 가장한 분쟁해결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조정기관의 권고나 조정안 제시와 같은 보완적 역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조정과 같은 ADR제도는 지나치게 신속한 해결이라는 사법경제적 측면의 기능적 절차주의에 맹목되어 버린 나머지, 오히려 분쟁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면이 없지 않아서 다수의 시민들이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려 하면서도 조정과 같은 ADR제도에 대해 큰 선호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조정의 테이블에 앉는 각 당사자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위한 교섭에 임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사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관련경험을 통하여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사내 법무팀의 법률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언론분쟁에 익숙하지 않으며, 재판이 아닌 조정이라 할지라도 중재부 앞에서 당사자로서 임하는 지위 자체가 자못 고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철저하게 대립 당사자 간의 평등한 법적공방이 이루어지는 재판과는 다르게 보통 대리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없이 조정에 임하는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점은 보다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이 당사자 간 합의에 기하여 성립된다는 점을 다시 주지해 볼 때 이러한 맥락에서 실질적인 합의와 형식적인 합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학계에서는 분쟁 내용에 대한 실체적 평가없이 구체적인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는 형태를 '알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려는 의견 또한 일부 존재하는데 이러한 학설의 존재 역시 조정의 이러한 특징과 단점을 해결하려는 방향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정기관으로서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진 나머지 분쟁 당사자가 시간에 쫓겨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화급하게 분쟁종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사법경제와 본질적 합의에 기초한 정의구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보다 조정의 가치를 높이고 당사자 간 합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올바른 자세라고 할 것이다.

**손수산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은 법관이 중재

위원으로 참여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준수법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다소 강제적, 직권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을 띤 조정절차에서 조정기관이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조정이 사실상 재판적 성격을 갖게 되어 소송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당사자는 조정기관이 제시한 액수에 대하여 대항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가 결국 사실상 조정기관의 판단에 구속되고, 심한 경우 중재부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기준이란 것을 인지하게 되면 당사자가 상대방이 이 액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율적 분쟁해결방식은 말 그대로 실제적 기준이나 정의에 다소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법관 등 제3의 판단주체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소송은 제3자인 법원이 판단 주체가 되므로 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은 그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에 그 해결책으로 ADR이 등장한 것인데, 조정기관이 또 다른 제3의 판단주체가 되는 것은 모순이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처분권주의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할 수가 없는 등 사적 자치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자율적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결정된 금액이 어떤 실제적 기준과 다르다고 하여 조정기관이 특정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혜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소송을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언론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조정절차를 따를 경우 조정의 경제성, 저렴성, 신속성, 간편성 등으로 용이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록 보다 적은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이것이 신청인에게 결코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조정기관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 조정이 결렬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신청인은 소송을 준비할 최소한의 비용에 대한 여력도 없어서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보다는 신청인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액에 대해서라도 합의하여 손해를 전보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조정제도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일도양단식 해결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인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패소의 위험을 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전보하여 가급적으로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회

복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 즉 위자료는 그 원인이 되는 손해가 정신적, 육체적인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구체적 계량이 불가능하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느낄 수 있는 손해의 정도가 다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맞는 보상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들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인 방법으로 재판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공평의 관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를 통해서 개인이 결정한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타인 혹은 사회의 기준으로 더 높은 금액을 권고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회복을 위해 받아야 할 위자료 그 이상을 받도록 유도하는 격이 된다. 이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적용한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결정한 손해배상금액은 고정화된 실정법규와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는 조정제도의 법창조적 기능을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한편 조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조정기관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율과 이용만족도가 매우 높고 조정기관 및 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ADR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고 언론중재법상 조정의 신속한 진행 및 종결이 규율되어 있어서 철저한 증거조사가 어렵고 따라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조정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다른 손해배상액을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절차를 보완하고 조정기관의 조정 및 협상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조정에 있어서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기관의 개입방안을 다시 고려해 보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회자**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에 대해 징벌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실무자의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실제 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조사관과 실무부서 팀장이 참석해 있으니,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류석창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 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인지대를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신청인은 원 단위에서 수억 원까지 자유롭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막상 심리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쉽게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처럼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진 신청인이 드물고,

오히려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최초 청구액 자체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다. 법률상 위원회가 인지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부담을 경감하여 쉽게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는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청인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제도의 상징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지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은영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 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가급적 약자인 신청인 입장을 존중하려 많이 노력한다. 그러나 중재부가 정의 관념에 따라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언론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부가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시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부담감이 있다. 따라서 중재부는 신청인에게 원하는 수준의 금액을 언론사가 거부하는 경우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언론사의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진행됨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신청인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금액을 받아야 함을 원한다면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이처럼 중재부는 조정 이후 절차에 대해 신청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회자 :** 손해배상 합의 금액만 두고 보면 더러 미흡한 결과로 보일 수 있으나, 중재부로서는 금액뿐 아니라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신청인의 의지 등 여러 상황까지 고려해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고충이 있는 것 같다.

**조광형 (뉴데일리 팀장) :** 신청인과 언론사 모두의 입장에서 언론조정중재제도는 큰 이득이다. 언론보도로 인해 불가피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측 모두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누구나 쉽게 조정을 신청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턱이 낮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해당 보도가 여러 매체에 이뤄진 경우 조정을 통해 신청인이 각각 매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는 금액은 적을지라도 이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신청인이 금전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대 도입 의견에 찬성한다.

**김태호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 일부 사례의 경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실제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든지, 위원회의 결정문이나 합의문뿐 아니라 단순히 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했다는 것으로써 단체의 홍보,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의 대부분은 중재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된다.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회자** : 누구나 쉽게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나, 중재부가 이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잘 거르려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나 오늘 전체 토론회 내용과 관련해 추가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다면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김어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하거나, 언론사의 게이트키퍼 시스템이 잘 작동하였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사안이 많은 것 같다. 제가 기자로 근무할 때 작성한 짧은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다. 첫 번째 기사는 시각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이동식 도서관 버스에 대한 기사이다. 미담 기사이기에 저는 아이들의 실명 공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데스크에서는 계속 아이들의 실명과 초상권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2008년 초 범인이 신문에 난 지적 장애아의 실명과 초상을 파악하고 일반 아이에 비해 유괴가 쉬울 것이라 보고 범죄 대상으로 지목했던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언론사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의 초상과 실명 보도를 더욱 주의하는 게이트키퍼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사도 미담기사이다. 태권도를 무척 잘하는 여학생이 대학에 합격했으나, 등록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사내 변호사 협회의 도움으로 등록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데스크에서는 이 기사가 미담기사이므로 당사자의 실명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기사라 하더라도 이 학생의 불우한 가정사가 기사에 일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익명 처리를 고집했다. 이처럼 기자나 데스크가 취재원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안이 많을 것 같다.

**사회자** :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은 미담기사이지만 개인의 가정사 등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해 익명처리 결정을 했다는 좋은 사례를 제시해 주셨다. 개인적으로 언론사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위원회에 신청되는 사례들을 보면 단순한 과실 때문인 경우가 많다.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께서도 본인의 생각과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을 듣고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조사관들께도 오늘 참석자들의 좋은 의견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오늘 토론회를 마치기 앞서 가장 직접적으로 조정예 관여, 사건을 처리하고 계시는 중재위원님으로부터 오늘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으면 한다.

**한박무 (대전중재부 중재위원) :** 기사화되는 사안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변했다. 제가 언론현장에 있던 시절에는 차량이 별로 없었기에 교통사고가 큰 이슈가 되었으며, 연탄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반드시 현장사진을 첨부해 기사화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안이 대중의 관심사가 아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치킨을 구매하기 위해 이른 시각부터 줄을 서 있는 장면을 촬영, 기사화했더니 시민 중 한명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기사의 가치나 내용이 변했고 초상권이나 인격권 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겨났다. 오늘 토론회는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토론회 진행 방법을 벗어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현직 기자들과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자, 미래의 법조인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더욱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한편, 과거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한 미군이 귀국해 애인과 키스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풀리처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베트남전에서 탄환을 피해 달리는 소녀의 사진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물론 이러한 사진들을 촬영하면서 기사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를 두고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 판례에서와 같이 공익성이 뒷받침되고 그것이 우선할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가 많다. 장문의 글보다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촬영이라 해도 초상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연구가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권 일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라는 제목에 관심이 생겨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중재부에서 항상 고민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기사가 초상권 침해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김정일 사망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그간 전례에 따라 초상을 공개한 것이라 보이나, 당사자가 피해를 주장하므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모자

이크 처리를 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독자들이 신문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좋은 사진을 촬영해 독자들에게 보여 줄 의무가 있고, 독자는 명확한 사진을 볼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독자들에게 좀 더 선명하고 좋은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언론사의 책임이므로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작위성이나 고의성이 없다면 언론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두 번째 세션에서 다뤄진 사례는 제가 속한 중재부에서 담당하 사건으로, 조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신청인은 해당 기사의 제보자로 경찰조사와 별도로 경찰서에서 기자의 취재에 응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1백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 소규모 매체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액에 굉장히 민감하다. 심지어 몇몇 언론사는 정정보도문을 더 크게 게재하겠으니 손해배상액은 줄여달라고 사정하기도 한다. 소규모의 영세한 언론사의 경우 소액일지언정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해당 기자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런 점에서 언론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재부의 손해배상액수 결정 과정에는 굉장한 고민이 요구된다.

개인적으로는 언론 종사자들에게 기사작성 등 전반적인 교육을 깊이 있고 폭넓게 시켜, 기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통해 기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무수히 많은 언론매체가 생겨나 언론인의 숫자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언론인의 자질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다. 언론사의 자체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언론계의 이익이 되리라 본다.

**사회자 :** 장시간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위원장님 총평으로 마무리 하겠다.

#### **IV. 위원장 총평**

**권 성 (위원장) :**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사무처 임직원들과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들과 일선 기자분들, 포털사 관계자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린다. 또한 국내 굴지의 언론사에서 장기간 근무하셨던 경륜을 바탕으로 고견을 주신 두 분 위원님들의 참석으로 오늘 토론회가 더욱 빛났다.

토론 내용과 관련해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한다. 첫째, 포털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포털을 언론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언론이 무엇인가라는 언론의 정의적, 구성요소적 관점에 따른 방법이다. 언론의 개념을 정의한 후 포털은 이러한 언론의 요소를 결했기 때문에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식의 접근방법으로, 독일식의 개념법학적 측면이 많다. 또 하나는 현재적 관점으로 판단하는 영미식 접근방법으로 기존 언론매체와 비교해 현재 포털이 메이저급 언론사 이상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므로 어떻게 언론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포털을 언론에 근접한 것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고, 현재의 사회 흐름상 포털을 언론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포털이 기사제공언론사와 공동불법행위자라는 관점을 제시했지만 학계와 법원에서 포털이 왜 언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동일성 이론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 생각한다. 현재 신문사와 포털의 관계를 신문사와 중학생의 관계로 비유해 보자. 예를 들어 한 유력 신문사가 어린 중학생을 고용해 신문을 배포시킨다고 할 때, 이 중학생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신문을 배달하는 이 중학생과 포털을 같은 입장이라 볼 수도 없다. 이것은 자기동일성의 문제라 생각한다. 기사제공 언론사는 자신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포털에게 동일성을 부여한 것이고, 포털은 이를 수용한 것이라 본다.

둘째,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위원회는 '손해배상액산정표'를 만들기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채점가감표'를 만드는 등 끊임 없이 합리적인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위원회가 제시해 온 손해배상액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맞지 않았다. 과거에는 신청인들의 욕구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인 10~20만원의 적은 금액으로도 막강한 언론사를 상대로 적은 금액이나마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상징성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민들은 권리의식이 매우 고양되어 상징적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배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위원회가 아무 이유 없이 손해배상금액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욕구를 어떻게든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위원회는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손해배상액을 조금이라도 과하게 하면 언론사로부터 언론의 자유 제한, 언론에 대한 간섭 혹은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

때마다 대단히 곤혹스럽지만 위원회는 전혀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고양시키고 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의 참석자들께서는 위원회의 이런 고충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처럼 위원회가 언론사를 재정적으로 압박하거나 핍박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국민 모두가 서로 윈-윈하기 위한 목적임을 양해해 달라.

끝으로, 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수가 객관적인 정의 관점에서 볼 때 언론사측에 너무 유리하고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언론이나 관련 법률에 문외한인 신청인을 상대로 언론사측에서는 사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힘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 당사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서는 다툼이 없지만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그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때에는 중재부의 판단에 맡겨, 중재부가 좀 더 객관적인 정의기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중재절차에 대한 언론사측의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언론사는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언론사측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금액을 결정하지는 않으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재절차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석자들께서 여러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논점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을 주셨다. 장시간 이어진 토론회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